

 금융위원회	<h1>보도참고자료</h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 11. 25-26 부산
	<b>보도</b>	<b>배포 시</b>	배포	
<b>책임자</b>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기한(02-2100-2630)	<b>담당자</b>	김영근 사무관 (02-2100-2642)	

##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9.11.25) 통과

**■ 정무위원회는 금일(14:3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 및 10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 1 법 제정 추진 경과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 우리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11년에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박선숙 의원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안 포함 총 14개 제정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그 결과, 5개 제정법안 및 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 금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2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무위원장 대안) 주요 내용

- ①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6대 판매규제 주요 내용 >

적합성 원칙	상품 판매 시 소비자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 고려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확인
설명 의무	상품 판매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불공정행위 금지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 (예) 대출 관련 다른 금융상품 계약이나 담보 강요 등
부당권유 금지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 객관적 근거없이 상품 비교 등
허위·과장 광고 금지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금지행위

- ② 6대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 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 가능

- ③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다수 도입됩니다.

< 금융소비자 피해방지·사후구제 관련 주요 제도 >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위법계약해지권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 해지 요구 가능
판매제한명령권	금융위는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판매자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 가능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함
자료요구권	소비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열람 요구 가능 →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소송중지제도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판단 하에 해당 소송 중지 가능
조정이탈금지제도	일반소비자의 소액분쟁(2천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당사자 제소 금지

④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① 일반인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됩니다.

\* (예외)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은 기존과 같이 비독립자문업 영위 가능

② 금융위는 주기적(3년 이내의 기간)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 금융당국은 ①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수수료 등 비교공시 및 ②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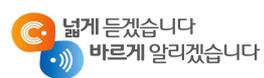
### 3 향후 일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분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참고2]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정무위 논의결과

	<p>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a href="http://www.fsc.go.kr">http://www.fsc.go.kr</a></p>	<p>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p>	
---	--	-------------------------------------	---

**1 |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및 판매업 등의 유형을 재분류

①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3)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등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험상품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4·11)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투자중개업자 포함)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투자자문업자

## 1.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 ①적합성·②적정성 원칙, ③설명의무, ④불공정영업행위·⑤부당권유금지, ⑥광고규제

◇ 기능별 규제체계를 기반으로 일부 상품에만 적용 중인 판매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쏘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강화

①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17)

- 현재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에만 도입 → 대출성 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보장성 상품으로 적용 확대

\*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 있는 상품

② **(적정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18)

\* 재산상황, 투자경험(투자성 상품), 신용 및 변제계획(대출성 상품) 등

- 현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서만 도입 → 일부 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확대

③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시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18)

-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이를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토록 의무화

※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전법 등 현행 주요 금융업법에 도입되어 있는 설명의무를 금소법으로 통합·이관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20)

<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

- ▶ ①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 ②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 ▶ ③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 ▶ ④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변경하는 행위 등

○ 대출 실행후 3년 경과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금지도 포함

※ 은행·보험 등 업권에서 일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사항을 정비하여 쏠 판매채널(직접판매, 대리·중개, 자문)에 적용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21)

< 부당권유행위 유형 >

- ▶ 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 ▶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 ③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 ④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행위 등

※ 금투·보험 등 업권에서 일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사항을 정비하여 쏠 판매채널에 적용

⑥ **(광고규제)**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규제(§22)

< 광고규제 관련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

▶ 필수 포함사항

- ①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 ③ 보장성 상품 :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가능 여부
- ④ 투자성 상품 : 운용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 등

▶ 금지행위

- ① 보장성 상품 : 보장한도,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 ② 투자성 상품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③ 대출성 상품 :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현행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규제를 금소법으로 통합·이관

## 2.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 판매원칙 위반 관련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①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금융회사의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소비자에 대해 일정기간\*\*내 해당 계약의 해지요구권 부여(\$48)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중요사항 설명, 거짓·왜곡·누락 금지),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② **(손해배상 입증책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전환(\$44)

③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이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58)

\* 설명의무(중요사항 설명, 설명서 제공),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필수 포함 사항, 금지 행위)

④ **(과태료)** 6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69)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위반 등

\*\* 적합성·적정성 원칙 미준수 등

##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 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신설

## ① (청약철회권 확대)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 계약 철회권을 부여하여 再考의 기회를 넓게 보장(\$4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자문에 적용
  - \* 현재 투자자문, 보험상품(일부 제외)에 적용 중

구분	유형별 숙려 기간
보장성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자문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②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49)

-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 ③ (사후구제 강화)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소송시 소비자의 정보접근 강화

- \* 현행 분쟁조정과정 중 소제기 시 조정절차 중지 →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41)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 절차 완료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42)
  - \* 주장하는 권리·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요구시, 이를 수용할 의무(\$28)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업비밀 현저한 침해 등의 경우 거절·제한 가능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기존 제도의 공백·미흡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포함

①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12)

○ 판매와 자문 간 겸영이 금지되는 독립자문업을 원칙(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예외)으로 하고,

○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

\* 독립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②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30·31)

○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등  
(역할) 금융교육 추진·평가·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매 3년)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

③ **(직판업자의 관리 책임)** 직판업자에게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부과

\* 과태료 : 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의무 위반시(1억원 이하)

과징금 : 대리·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위반 시

\*\* 다만, 직판업자가 대리·중개업자에 대해 적절한 주의·감독시 면책

④ **(대출모집인 감독)** 그간 법상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을 법상 감독 대상(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규정(§2·11)

\* 현재 법적근거 없이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등록 및 규율

## 참고 2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정무위 논의결과

### 1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설명 의무’ 에 한하여 도입

의원안	정부안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증책임 전환 대상 행위를 ① 모든 위법 행위로 규정한 법안, ②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칙 의무로 규정한 법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증책임 전환 대상 행위를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로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 사후구제를 위해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사소송 원칙에 반하고 금융회사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도입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립</li> </ul>

### 2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 → 삭제

의원안	정부안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형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액 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율대상이 투자형 상품에 국한되므로 기존과 같이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운영하자는 의견 제기</li> </ul>

###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미도입

의원안	정부안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li> </ul>	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 사후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소법 제정안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립</li> </ul>

### 4 집단소송제도 → 미도입

의원안	정부안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중요한 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인정</li> </ul>	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 사후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법사위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논의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이 대립</li> </ul>

### 5 대리·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 → 미도입

의원안	정부안	주요 논의 내용
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비자의 리베이트 요구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li> </ul>